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2018. 10. 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 - 200 - 5821, 5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범위) ①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4.>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약류ㆍ고압가스ㆍ인화성 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의 정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14. 11. 14.>

제4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5조(보호수역 입역허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입역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6조(보호수역 입역통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제1항에 따라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

11. 14.>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흘수제약선
2.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

제9조 삭제 <2015. 11. 2.>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4.>

제10조의2(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꿔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 전속력 또는 후진(後進)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 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 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본조신설 2018. 10. 4.]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1조(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은 별표 5와 같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기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4. 11. 14.>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기관이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협의)요청서에 안전

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작성·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제목개정 2014. 11. 14.]

제12조(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2014. 11. 14.>

제13조(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4., 2015. 12. 17.>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4. 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4., 2015. 12. 17.>

제14조(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2.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3.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7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4. 4. 8.>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4.>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2.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주소 변경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17.>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17., 2017. 1. 3.>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 3.>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항행장애물의 크기·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조류·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

제22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5. 12. 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대하여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23조(항로의 고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5. 12. 17., 2018. 10. 4.>

1. 선박의 항로·속력 또는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24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12. 17.>

제25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5. 8. 4., 2015. 12. 17.>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제26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27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① 법 제3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제28조 삭제 <2015. 11. 2.>

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3. 5. 23.>

제30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선박출항통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32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9., 2015. 12. 17., 2017. 7. 28.>

1. 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 선박의 명세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 조치사항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33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 별표 11에 따른다. <개정 2014. 4. 8.>

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17. 1. 3.>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제35조(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2.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제36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4.>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목적 및 심사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3. 5. 23., 2017. 1. 3.>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만 해당한다.
4.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8조(수수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제39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4.>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제40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4.>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권한·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의2(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4.]

제41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10. 4.>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42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10. 4.>

제43조(증서)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20서식에 따른다.

제44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45조(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로 한다.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3.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제4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2015. 12. 17.>

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3., 2015. 12. 17., 2017. 1. 3.>

1. 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변경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3.>

제48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9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50조(선박 점검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이하 "기국통제"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5. 12. 17.>

제51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7.>

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사항을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알릴 수 있다.<개정 2013. 3. 24.>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제목개정 2015. 12. 17.]

제51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취소 또는 지정의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 법 제47조제3항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 「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 「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⑤ 법 제5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52조(지도·감독)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4.>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5.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기국통제가 필요한 경우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영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14. 11. 14.]

제52조의2(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 표시 증표)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53조(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선박의 항법

제54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15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5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법 제8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5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8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5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97조에서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이나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1. 14.]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17. 1. 2.>

1.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통지: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2017년 1월 1일
4. 제1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017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서: 2017년 1월 1일
6. 제19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보고: 2017년 1월 1일
8.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9. 삭제<2017. 1. 2.>
10. 삭제<2017. 1. 2.>
11. 제31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36조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2017년 1월 1일
12의2.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4. 삭제<2017. 1. 2.>
15.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2017년 1월 1일
16. 삭제<2017. 1. 2.>

[본조신설 2014. 11. 14.]

부칙 <제303호,2018.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착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화약류(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약류는 폭약 80톤 이상이거나 다음 표에 해당하는 화약 및 화공품 등의 물질로서 폭약 80톤 이상으로 환산되는 수량인 경우를 말한다.

종 류		폭약 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
화 약		2톤
화공품 (탄약을 포함한다)	실탄 또는 공포탄	200만개
	신관 또는 화관	5만개
	총용뇌관	250만개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	100만개
	신호뇌관	25만개
	도폭선	50킬로미터
	기타 화공품	해당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폭약·화약 및 화공품외의 물질로서 폭발성을 가진 것		2톤

[별표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7조제1항제1호 관련)

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인천항 출입 항로	입항항로 (제1항로, 동수도 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7분32초 2. 북위 37도16분49초, 동경 126도24분25초 3. 북위 37도13분13초, 동경 126도24분29초 4. 북위 37도10분56초, 동경 126도22분17초 5. 북위 37도09분22초, 동경 126도20분02초 6. 북위 37도07분56초, 동경 126도19분06초 7. 북위 37도07분30초, 동경 126도19분53초 8. 북위 37도09분07초, 동경 126도20분37초 9. 북위 37도10분01초, 동경 126도22분14초 10. 북위 37도13분08초, 동경 126도25분11초 11. 북위 37도15분44초, 동경 126도25분09초 12. 북위 37도18분10초, 동경 126도26분43초 13. 북위 37도19분44초, 동경 126도28분08초
	출항항로 (제2항로, 서수도 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7도20분56초, 동경 126도27분09초 2. 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7분32초 3. 북위 37도19분53초, 동경 126도28분14초 4. 북위 37도19분25초, 동경 126도27분49초 5. 북위 37도20분14초, 동경 126도26분35초 6. 북위 37도19분22초, 동경 126도20분17초 7. 북위 37도16분38초, 동경 126도15분43초 8. 북위 37도09분28초, 동경 126도10분37초 9. 북위 37도09분49초, 동경 126도09분50초 10. 북위 37도12분28초, 동경 126도11분56초 11. 북위 37도16분31초, 동경 126도14분26초 12. 북위 37도19분52초, 동경 126도20분05초 13. 북위 37도20분40초, 동경 126도23분27초
	신항 출입항로 (제3항로, 북장자 서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7도18분10초, 동경 126도26분43초 2. 북위 37도18분45초, 동경 126도27분44초 3. 북위 37도19분42초, 동경 126도28분28초 4. 북위 37도19분53초, 동경 126도28분14초
	주의해역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7분32초 2. 북위 37도19분53초, 동경 126도28분14초 3. 북위 37도19분25초, 동경 126도27분49초 4. 북위 37도19분54초, 동경 126도27분07초 5. 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7분32초
부산항 출입 항로	분리대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29초, 동경 129도07분02초(항계선) 2. 북위 35도03분31초, 동경 129도08분13초 3. 북위 35도03분51초, 동경 129도08분29초
	입항항로	○ 분리대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42초, 동경 129도07분10초(항계선) 2. 북위 35도04분25초, 동경 129도09분03초
	출항항로	○ 분리대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12초, 동경 129도06분51초(항계선) 2. 북위 35도02분53초, 동경 129도07분37초
광양만 출입 항로	분리대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6분37초 2.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6분48초 3. 북위 34도39분32초, 동경 127도56분05초 4. 북위 34도39분32초, 동경 127도55분48초
	입항항로 제1구간	○ 분리대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8분02초 2. 북위 34도39분32초, 동경 127도57분05초
	출항항로 제1구간	○ 분리대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2. 북위 34도39분32초, 동경 127도54분47초
	제1 주의해역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9분32초, 동경 127도54분47초 2. 북위 34도39분32초, 동경 127도57분05초 3. 북위 34도40분34초, 동경 127도56분50초 4.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분리선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북위 34도40분26초, 동경 127도55분45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50분12초
입항항로 제2구간	○ 분리선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0분34초, 동경 127도56분50초 2. 북위 34도41분22초, 동경 127도56분38초 3.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4.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5.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출항항로 제2구간	○ 분리선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2. 북위 34도42분50초, 동경 127도49분59초
제2 주의해역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2분50초, 동경 127도49분59초 2.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3.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4. 북위 34도45분46초, 동경 127도49분56초 5. 북위 34도45분32초, 동경 127도48분39초 6.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깊은 수심 항로 제1구간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5분37초, 동경 127도49분06초 2. 북위 34도45분41초, 동경 127도49분28초 3. 북위 34도46분38초, 동경 127도49분13초 4. 북위 34도47분44초, 동경 127도48분46초 5. 북위 34도47분41초, 동경 127도48분29초
입항항로 제3구간	○ 깊은수심항로 제1구간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5분46초, 동경 127도49분56초 2.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3. 북위 34도48분05초, 동경 127도49분18초 4. 북위 34도48분02초, 동경 127도49분00초 5. 북위 34도47분46초, 동경 127도49분04초
출항항로 제3구간	○ 깊은수심항로 제1구간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5분32초, 동경 127도48분39초 2. 북위 34도47분37초, 동경 127도48분08초
항행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금지구역	1. 북위 34도47분44초, 동경 127도48분46초 2. 북위 34도47분46초, 동경 127도49분04초 3. 북위 34도48분02초, 동경 127도49분00초 4. 북위 34도48분01초, 동경 127도48분48초
제3 주의해역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7분37초, 동경 127도48분08초 2. 북위 34도47분44초, 동경 127도48분46초 3. 북위 34도48분01초, 동경 127도48분48초 4. 북위 34도48분02초, 동경 127도49분00초 5. 북위 34도48분05초, 동경 127도49분18초 6. 북위 34도48분38초, 동경 127도49분07초 7. 북위 34도48분28초, 동경 127도47분54초
깊은수심 항로 제2구간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8분31초, 동경 127도48분18초 2. 북위 34도48분34초, 동경 127도48분41초 3.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7도48분16초 4.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7도47분53초
입항항로 제4구간	○ 깊은수심항로 제2구간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8분38초, 동경 127도49분07초 2.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7도48분40초
출항항로 제4구간	○ 깊은수심항로 제2구간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8분28초, 동경 127도47분54초 2.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7도47분29초
제4 주의해역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7도47분29초 2.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7도48분40초 3.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4. 북위 34도50분32초, 동경 127도47분20초

[별표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7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

항로명	구간	속력 (대수속력을 말한다)
부산항 출입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간 1. 북위 35도04분42초, 동경 129도07분10초(항계선) 2. 북위 35도04분25초, 동경 129도09분03초 3. 북위 35도02분53초, 동경 129도07분37초 4. 북위 35도04분12초, 동경 129도06분51초(항계선)	10노트
광양항 출입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간 1. 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7도49분57초 2. 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7도48분34초 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4.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5.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4노트 (위험화물운반선은 12노트)

[별표 4] <개정 2014.4.8>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항 로 명	항 법
인 천 항 출입항로	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제1항로, 동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항로(제2항로, 서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낮에는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산 항 출입항로	1.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산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부산항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 양 만 출입항로	1.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광양만 출입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항선박은 입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선박은 출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광양만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흘수제약선은 깊은수심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동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항로 안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수심항로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흘수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깊은수심항로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에 따라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흘수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주의해역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상의 조종 준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통항흐름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항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에는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18. 10. 4.>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진단기준
1. 공통사항	가. 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수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나. 진단대상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다. 진단대상사업자와 해상이용자의 의견 대립의 최소화 라. 안전여유(Safety Margin)에 대한 충분한 고려 마. 진단대상사업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의 최소화 바. 충분한 통항안전대책 수립 사. 적정한 항로표지 설치 아. 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수역 또는 진단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역에서의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2.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및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가. 선박의 조종성능(선회성·정지거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나. 현재 해상교통 및 항만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장래 교통흐름의 추정 다. 인근 항만 출입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대한 고려
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가. 다른 시설과 최대한 이격하여 설치 나. 항로횡단교량은 항로와 수직으로 설치하고, 전후 충분한 직선거리 확보 다. 시설물 건설·부설에 따른 공사단계별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
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가. 선박의 조종성능(선회성·정지거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나. 항만의 지형·자연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다. 장래 교통량 예측결과의 반영

※ 비고

위 표에 따른 진단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개정 2013.3.24>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진단항목별 포함내용

항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해상교통현황조사	가. 사업개요 나. 설계기준 다. 자연환경 라. 항행여건 마. 해상교통 조사 바. 해양사고 발생현황
해상교통현황측정	가. 해상교통특성 나. 해역이용자의 의견 다. 해상교통혼잡도 라. 현행 해상교통류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가. 통항안전성(通航安全性) 나. 접이안안전성(接離岸安全性) 다. 계류안전성(繫留安全性) 라. 해상교통류(海上交通流) 마. 종합평가
해상교통안전대책	가. 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 공사 중 안전대책 – 완공 후 안전대책 나.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대상사업 시행을 위한 대안 제시

2. 진단항목별 설정기준

가.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안전성

항목	설정기준
자연환경	1) 바람 가) 풍속: 해당 항만의 입출항 한계 풍속 또는 14m/s 나) 풍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선박 조종에 가장 불리한 방향

	2) 조류: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 및 최강낙조류 3) 수심: 현행 해도상의 수심 또는 장래계획상 준설수심 4) 파랑 가) 파고: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파고 나) 평균 파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선박 조종에 불리한 파향 5) 안개: 해당 항만의 입출항 제한 최저 시계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해당 선박의 출항통제 적용 시계 중 선박 조정에 불리한 시계
통항환경	1) 통항 형태: 해당 해역에서 선박 양방향 통항(교행)을 기본원칙으로 설정 2) 통항 규제: 해당 해역의 각종 통항 규제 3) 예선 운용: 해당 항만의 예선 운용 세칙 4) 표준 조선법: 현지 교통조사 결과 또는 해상이용자 의견 5)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 IMO의 조종성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선박운항자	1) 해기면허를 소지한 해기사 2) 도선구 적용구역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도선사 참여
평가기법	1) 근접도 평가: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과의 충돌(침범)확률 2) 제어도 평가: 타각과 엔진 등에 대한 사용량 3) 운항자(주관적) 평가: 선박 운항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 또는 위험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4) 종합평가: 위의 3가지 평가 방법에 대한 종합 평가

나. 계류안전성 평가

항목	작성기준
자연환경	1) 바람: 순간 최대풍속 및 풍향 2) 조류: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 및 최강낙조류 3) 파랑 가) 파고: 설계파 최대파고 나) 파향: 선박 계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향 다) 파주기: 설계파 주기 및 관측된 장주기파
선박시스템 동요 해석	1) 선박: 자유도 운동에 대한 시계열 동요 해석 2) 계류삭(繫留索): 선박거동에 따른 계류삭 장력의 시계

	열 해석 3) 방현재(防舷材): 선박거동에 따른 방현재 반력의 시계열 해석
하역 한계	1) 하역가능한계: 선박동요 요소별 하역한계 2) 항만가동률: 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항만가동일수 및 가동률

다.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항목	작성기준
해상교통량	장래 물동량: 과거 물동량을 바탕으로 장래 물동량 추정
해상교통혼잡도	1) 교통량: 기본교통량, 가능교통량, 실용교통량으로 구분하여 교통량의 혼잡도 모델링 평가 2) 환산교통량: 통항 선박의 제원을 활용한 환산교통량 평가 3) 교통혼잡도 분석: 주요 항로별 항로폭의 혼잡도지수 범위에 따른 교통혼잡도 분석

라. 교통류시뮬레이션 평가

항목	작성기준
종합환경스트레스 또는 위험도	1) 조건설정: 해역별 해상교통 환경조건 설정 및 해상교통 특성 2) 스트레스값: 해상교통환경·조선환경 스트레스값 및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산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도 산출
해역안전성	1) 안전성평가: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대상해역 및 항로의 안전성 2) 위험해역 도출: 종합환경 스트레스값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교통량 밀집 위험해역

※ 비고

위 표에 따른 진단항목 및 그 설정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의2] <신설 2014.11.14.>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항로나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전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변경의 경우 채굴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 전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의 지정 전 또는 골재채취 허가의 변경 승인 전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1) 교량 또는 터널의 건설·보수의 경우 「도로법」 제25조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처분 전 – 그 밖의 변경 또는 보수의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등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결정 전 2) 해월케이블을 설치·부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그 밖의 공사 계획의 인가 전 3)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신청 전,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 변경의 경우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사항의 협의·승인 전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1)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 「항만법」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전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지정·고시 전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지정·고시 전 4)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전)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 계류시설에 대한 증축·개축 없이 접안능력을 상향하려는 경우 시설능력의 변경 지정 전 5) 방파제·파제제 및 방조제의 건설 또는 변경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공고 전(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전)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28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신청,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
마. 그 밖의 사업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전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전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협의·승인 등이 의제(擬制)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되기 전까지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3.3.24>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등록요건

종 류	기술인력	장 비
1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4명 이상 3) 보조자급: 3명 이상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다만, 2대 이상의 시각화시스템 및 선교시스템을 갖추어 2대 이상의 선박으로 실시간 통합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2종 안전진단 대행업자	1) 책임자급: 1명 이상 2) 선임자급: 2명 이상 3) 보조자급: 2명 이상	1) 선박조종시뮬레이터: 1대 2) 해상교통조사장비: 1조 이상

※ 비고

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인력 중 선임자급 및 보조자급의 경우에는 기본자격자가 대체자격자보다 많아야 한다.

2.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가. 기술인력

구분	자격요건
책임자급 인력	선임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선임자급 인력	1) 기본자격: 2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대체자격 가)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나)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다)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사안전관련 공공기관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해사안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조자급 인력	1) 기본자격: 3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대체자격 가) 해사안전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해사안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다) 해사안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사안전관련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해사안전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이 경우 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비고 1) 상위급의 진단인력은 바로 아래 급 진단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해사안전 관련 분야는 선박항해학, 선박운용학, 선박운항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분야를 말한다. 다만,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분야일 경우에는 이수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기술인력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장 비

장비명	최소 구성 및 성능 요건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1) 통제시스템(Control System): 운항 시나리오 작성, 선박모델 개발, 3차원(3D) 지형지물개발 및 적용, 시뮬레이션 진행사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

(Real Time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	2) 시각화시스템(Visual System): 주변 환경의 모양·크기 등에 있어 실제상황과 유사한 판단자료를 선박조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육상 및 해상 환경 재현이 가능할 것
	3) 선교시스템(Bridge System): 실제 선박과 같은 조종장치(Console Panel)로 구성된 실물모형의 선교(Mock-up Bridge)를 갖출 것
	4) 수행결과분석시스템(Debriefing System): 시뮬레이션의 수행과정과 수행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
	5) 해상교통조사장비: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레이더를 이용한 해상교통 흐름 및 교통량 분석이 가능하고, 통항선박의 일별, 시간대별, 선종별 및 선박규모별 항적도 제시 및 교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
※ 비고 위 장비의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개정 2018. 10. 4.>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제42조 및 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 제6호 또는 제54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자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가.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법	등록취소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7호	경고	등록취소		
9) 법 제2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2호	등록취소			
10)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8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9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	법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제23조제1항 제10호		3개월	6개월	
13)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1호	등록취소			

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1호	지정취소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조직·인원 및 사무소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2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2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그 밖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2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3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48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6호	지정취소			

다.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5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2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가)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나) 그 밖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7호	경고	등록취소		
9)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8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9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10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11호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3)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12호	등록취소			

[별표 9] 삭제 <2015.11.2.>

[별표 10] <개정 2017. 7. 28.>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1조 관련)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가. 적용선박: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하 "내항여객선"이라 한다)
   나.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
   다. 기상상태별 출항통제선박 및 통제절차

기상상태	출항통제선박	통제절차
풍랑·폭풍해일주의보	1)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 중 앞바다(이하 이 표에서 "앞바다"라고 한다)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출항정지조건·운항정지조건(이하 "출항정지조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내항여객선에 한정하여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이하 이 표에서 "운항관리자"라 한다)는 풍랑·폭풍해일주의보 발효 시 기상상황을 종합분석(다음 기항지 도착예정시간 내에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는 기상특보·예보의 발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할 것 나) 운항관리자는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을 확인하고 선장의 의견을 들을 것 다) 운항관리자는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종합분석된 해상상태가 출항정지조건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항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라)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2)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여	가) 운항관리자는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이 출항통제선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나)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풍랑·폭풍해일경보, 태풍주의보·경보		모든 내항여객선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계제한시	시정 1킬로미터 이내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출항통제권자는 시계제한 시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정 11킬로미터 이내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비고

1.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2.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3. "총톤수"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에 기재된 톤수를 말한다.

2.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

가. 적용선박: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도선

나. 출항통제권자: 지방해양수산청장

다. 기상상태별 출항통제선박 및 통제절차

기상상태	출항통제선박	통제절차
풍랑·폭풍해일 주의보	1)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 시 출항신고 선박의 총톤수·길이·항행구역 등을 확인하여 통제

		박 3)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풍랑·폭풍해일 경보		1) 총톤수 1,000톤 미만으로서 길이 63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태풍주의보 및 경보		1)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시계제한시	시정 0.5킬로미터 이내	1)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嚮導船)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	
	시정 11킬로미터 이내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을 적용한다.
2. 출항통제권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항만의 효율적 운영 또는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총톤수" 및 "길이"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에 기재된 톤수 및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예부선 결합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은 예선톤수만을 말한다.

[별표 11] <개정 2018. 10. 4.>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제33조 관련)

1.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여객선 외의 선박

구 분	내 용
가.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원으로서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시달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사.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기적인 검사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항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에 따른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항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차.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이어야 한다. 6)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7)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 고 1.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제3호에 따른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구 분	내 용
가.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

	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원으로서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사업장에 한함),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주기적인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차.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하여야 한다.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월 선박을 방문하여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비 고 1. 영 제1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적용한다. 가. 나목 1) 및 2): 바목 3) 및 4)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	

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의 규정, 문서화 및 육상지원의 제공

나. 라목 1) 및 2) 가): 바목 3) 및 4)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한 선장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과 이를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 및 책임의 규정

다. 마목 1) 나): 바목 3) 및 4)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 회사규정의 숙지

라. 바목 3) 및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마. 사목 1): 기상악화 시 자체 입출항통제 또는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의 수립

바. 카목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 외의 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마목 1)나)

나. 바목 3) 및 4)

3. 여객선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르고, 수먼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제3호에 따른다.

3. 수먼비행선박

구분		내용
가.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운항선·시운전선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라) 안전과 관련된 준해양사고 등의 보고를 장려하는 방침 마) 안전문화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안전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운항선·시운전선	1)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운항선	1)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

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시운전선	원으로서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수면 비행선박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시달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시운전선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항선 · 시운전선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나)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해상종사원의 승선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

		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 간에 의사소통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및 심의·결정 등을 위한 안전위원회의 구성 나) 안전관리체제 운용 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전달, 제도의 신설·변경 등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체제
바. 선상운용(船上運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하며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운항관리일반 나) 기상 다) 선원의 휴식 및 건강상태 관리 라) 수번효과 고도 한계, 임시 상승 고도 한계 및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의 한계 등을 포함한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마) 보안 바) 위험물 사) 통신 및 보고 아) 탑재관리 자) 여객관리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

		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출항 전 여객의 안전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여객 친숙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시운전선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시운전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시운전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운전 해역 나) 시운전 항해계획 다) 시운전 업무 라) 시운전 단계 별 안전 확인 및 보고 사항 마) 시운전 제한 및 중단 사항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전 대상 선박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선박이 기술자료에 합치하는지 여부 나) 선박 중량의 한계 다) 탑재 및 분배 한계 라) 무게 및 양력 중심 한계 마) 속도의 한계 바) 수면효과 고도 한계 사) 선박 분류에 따른 임시 상승 고도 한계 아)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의 한계 자) 운전 및 기기 사용의 제한 차)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보장 4)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한 시운전 실행을 위하여 통신 및 보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5)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6)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대응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수행을 위한 비상 운영체제 나) 비상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및 책임자 업무범위

		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활동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충돌 나) 퇴선 다) 오염 라) 좌초 마) 화재 및 폭발 바) 안정성 상실 사) 조종통제 불능 아) 구조결함 발생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차) 여객 및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4)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운전선	1) 시운전 선박의 잠재적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충돌 나) 퇴선 다) 오염 라) 좌초 마) 화재 및 폭발 바) 안정성 상실 사) 조종통제 불능 아) 구조결함 발생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차)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사고, 위험	운항선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준해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시운전선	양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자체 안전보고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해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자체 자율보고 나) 자체 안전보고절차에 따라 보고 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자료화, 분석 및 피드백 등 정보 처리절차 2) 선박, 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1)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한다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기적인 검사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 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선박 검사 및 정비를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된 검사·정비조직을 갖추어야한다.
	시운전선	1) 시운전 실행 전 선박의 선체 및 기기들의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차.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선박에서 필수 보유하여야 할 문서를 목록화하고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운전선	1)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다)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마)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운항선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종사자 등이 이 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이어야 한다. 6)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7)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체제 활동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의 절차 나) 안전관리체제 활동 저해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절차

		9) 운항해역, 운전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시운전선	1) 계획된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이행 기록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운전 해역, 시운전 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비 고

1. 위 표에서 "운항선"이란 제2호에 따른 시운전선 외의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시운전선"이란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받아야 하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별표 12]

인증심사 수수료(제38조 관련)

1. 기준수수료

가.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table>
<tr><th>인증심사
종 류</th><th colspan="2">구 분</th><th>수 수 료</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최초·갱신
인증심사</td><td rowspan="6">종
업
원
수</td><td>10명 미만</td><td>67,360원</td><td rowspan="12">○별표 13에 따른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대상 분사무소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수수료와는 별도로 심사대상 분사무소마다 실제 심사소요시간당(1인 기준) 16,84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의 인증심사수수료는 사업장의 인증심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인증심사의 수수료는 문서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며, 문서심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종류가 1개인 경우 : 67,360원
2) 선박의 종류가 2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 : 134,720원
3) 선박의 종류가 5개 이상인 경우 : 202,080원</td></tr>
<tr><td>10명 이상~
30명 미만</td><td>84,200원</td></tr>
<tr><td>30명 이상~
100명 미만</td><td>101,040원</td></tr>
<tr><td>100명 이상~
500명 미만</td><td>134,720원</td></tr>
<tr><td>500명 이상~
1,000명 미만</td><td>202,080원</td></tr>
<tr><td>1,000명 이상</td><td>실제 소요된 심사일수(1인 기준) × 134,720원</td></tr>
<tr><td rowspan="6">중 간
인증심사</td><td rowspan="6">종
업
원
수</td><td>10명 미만</td><td>50,520원</td></tr>
<tr><td>10명 이상~
30명 미만</td><td>67,360원</td></tr>
<tr><td>30명 이상~
100명 미만</td><td>84,200원</td></tr>
<tr><td>100명 이상~
500명 미만</td><td>101,040원</td></tr>
<tr><td>500명 이상~
1,000명 미만</td><td>134,720원</td></tr>
<tr><td>1,000명 이상</td><td>실제 소요된 심사일수(1인 기준) × 134,720원</td></tr>
<tr><td>임시
인증심사</td><td colspan="3">수수료 : 50,520원</td></tr>
</table>

나.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인증심사종류	선박의 종류	기본수수료	비 고
최초·갱신인증심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67,360원	○선박인증심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군에 속하는 선박	84,200원	
중간인증심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50,520원	
	제2군에 속하는 선박	67,360원	
임시인증심사	기본수수료: 50,520원		

○ 선박종류에 의한 구분
- 제1군: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가스운반선·산적화물선·고속화물선 및 기타화물선
- 제2군: 여객선·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톤수계수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총톤수 1,600톤 이상: 1

2. 공휴일 심사 및 국외 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국외에서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비고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심사에 종사하는 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13.5.23>

인증심사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Ⅰ. 방법

인증심사종류	인증심사방법
1. 최초인증심사	가. 내부심사 실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되어 3개월 이상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사업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별로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나.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Ⅱ에 따른 분사무소의 수 이상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다.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는 제34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먼저 심사한 후에 행한다. 라.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행한다.
2. 갱신인증심사	가.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상태를 심사한다. 나. 제1호나목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갱신인증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중간인증심사	가.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나. 제1호나목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중간인증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임시인증심사	가.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별표 11 제1호,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차목·카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상태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 2) 별표 11 제1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계획 및 그에 대한 시행계획 3)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 도입 후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 나. 선박의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가목 1)에 관한 선장 및 선박직원(「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의 숙지여부 2) 항해 전 해상종사원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여부 3)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별표

	11 제2호를 적용받는 선박은 제외한다)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해상종사원들이 이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다.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함에 따른 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 후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5. 수시인증심사	가. 안전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나. 제1호 나목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비고 1.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합격일부터 사업장에 대하여는 12개월 이내에, 선박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위 표 제4호가목1) 및 2)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계획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3)에 따른 내부심사계획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에서 행한다. 4. 인증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Ⅱ. 인증심사대상 분사무소의 수

분사무소수	최초·갱신인증심사	중간인증심사
1	1	1
2	2	1
3	2	2
4	3	2
5	3	2
6	3	2
7	4	3
8	4	3
9	4	3
10	5	3
11~17	6	4
18~24	4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4
25 이상	4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별표 13의2] <개정 2017. 1. 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

(제51조의2제1항 관련)

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최근 3년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같은 종류의 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10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개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100점) = 저사고율(60점) + 안전경영 지표(40점)

1) 저사고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저사고율} = \frac{\text{업체별 해양사고율}}{\text{총 평가대상의 해양사고율}} + \frac{\text{업체별 사상자율}}{\text{총 평가대상의 사상자율}}$$

2)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

가) 사업자의 고용안정성

나)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다)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

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

마)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나. 최근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1) 사업자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하 이 표에서 "운영선박"이라 한다)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이 표에서 "해양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하거나, 운영선박이 5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실종되거나 5명 이상의 여객이 중상(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경우

3)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로 전손(全損)된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의 전손(全損)을 일으킨 경우

4) 운영선박이 중대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중대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5)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6) 운영선박이 다음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외국정부의 항행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1회
- 운영선박이 4척 이상 7척 이하인 경우: 2회
- 운영선박이 8척 이상인 경우: 3회 이상

7) 사업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Tokyo MOU) 등 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의 안전수준 평가에서 보통(medium)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1) 법 제5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효력 기간 중 효력정지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정지 3개월

1) 운영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4명 이하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4명 이하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여객선인 운영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4명 이하의 여객이 중상을 입은 경우
3) 해양사고로 인하여 운영선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선박이 해양사고를 일으켜 다른 선박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
4) 운영선박이 제1호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5) 운영선박이 제1호나목6)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정부의 항행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14] <개정 2013.3.24>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제53조 관련)

수수료의 종류 / 근무시간의 구분	기본 수수료
근무시간 내	300,000원
근무시간 외	450,000원

비고 :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유형, 통제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5]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54조 관련)

구 분	적 용 수 역
홍 도 항 로	○ 분리대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6분17초, 동경 128도44분22초 2. 북위 34도35분53초, 동경 128도44분40초 3. 북위 34도32분59초, 동경 128도39분40초 4. 북위 34도33분23초, 동경 128도39분22초 ○ 서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6분17초, 동경 128도44분22초 2. 북위 34도33분23초, 동경 128도39분22초 3. 북위 34도35분11초, 동경 128도37분52초 4. 북위 34도37분59초, 동경 128도42분52초 ○ 동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32분59초, 동경 128도39분40초 2. 북위 34도35분53초, 동경 128도44분40초 3. 북위 34도34분11초, 동경 128도46분04초 4. 북위 34도31분17초, 동경 128도41분04초
보길도 항 로	○ 분리대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05분17초, 동경 126도29분35초 2. 북위 34도04분41초, 동경 126도32분53초 3. 북위 34도03분59초, 동경 126도32분41초 4. 북위 34도03분41초, 동경 126도30분53초 5. 북위 34도03분59초, 동경 126도29분11초 ○ 서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05분17초, 동경 126도29분35초 2. 북위 34도04분41초, 동경 126도32분53초 3. 북위 34도06분11초, 동경 126도33분23초 4. 북위 34도06분53초, 동경 126도29분47초 ○ 동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03분59초, 동경 126도32분41초 2. 북위 34도03분41초, 동경 126도30분53초 3. 북위 34도03분59초, 동경 126도29분11초 4. 북위 34도02분05초, 동경 126도28분11초 5. 북위 34도01분41초, 동경 126도30분41초 6. 북위 34도01분53초, 동경 126도33분05초
거문도	○ 분리대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항 로	1. 북위 34도07분06초, 동경 127도14분12초 2. 북위 34도07분54초, 동경 127도21분42초 3. 북위 34도09분00초, 동경 127도25분12초 4. 북위 34도08분24초, 동경 127도25분18초 5. 북위 34도07분18초, 동경 127도21분54초 6. 북위 34도06분30초, 동경 127도14분18초 ○ 서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08분30초, 동경 127도14분00초 2. 북위 34도09분18초, 동경 127도21분36초 3. 북위 34도10분30초, 동경 127도25분06초 4. 북위 34도09분00초, 동경 127도25분12초 5. 북위 34도07분54초, 동경 127도21분42초 6. 북위 34도07분06초, 동경 127도14분12초 ○ 동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06분54초, 동경 127도25분30초 2. 북위 34도05분54초, 동경 127도22분06초 3. 북위 34도05분06초, 동경 127도14분30초 4. 북위 34도06분36초, 동경 127도14분24초 5. 북위 34도07분18초, 동경 127도21분54초 6. 북위 34도08분24초, 동경 127도25분18초

[별표 16] <개정 2013.3.24>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56조 관련)

<table>
<tr><th>선 종</th><th colspan="2">작 업 내 용</th><th>표 시 등 화</th><th>가 시 거 리</th><th>설 치 기 준</th></tr>
<tr><td rowspan="4">트롤어선</td><td rowspan="3">외끌이의 경우</td><td>어망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td><td>수직선상에 백색 등화 2개</td><td rowspan="4">법 제8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다른 등화보다 그 가시거리가 짧아야 하되, 1해리 이상의 수평선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td><td rowspan="4">0.9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td></tr>
<tr><td>어망을 건져 올리고 있는 경우</td><td>수직선상에 홍색의 등화 1개와 그 윗부분에 백색등화 1개</td></tr>
<tr><td>어망이 장애물이 걸린 경우</td><td>수직선상에 홍색 등화 2개</td></tr>
<tr><td colspan="2">쌍끌이의 경우</td><td>외끌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화 외에 야간에는 한 쌍을 이룬 다른 선박의 진행방향을 비추는 탐조등 1개</td></tr>
<tr><td>선망어선</td><td colspan="2">어구에 의하여 조종성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td><td>수직선상에 1초마다 번갈아 섬광을 발하며, 꺼지고 켜지는 시간이 동일한 황색의 등화 2개</td><td></td><td></td></tr>
</table>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3.>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국 적		선박의 종류	
	선적항		총톤수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입역하려는 보호수역의 명칭		입역 예정 일시	. . . : 부터 . . . : 까지
	최근 3년간 입역허가 여부			
	입역 목적(재해의 복구 또는 공익상 필요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12.17.>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12.17.>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17.>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협의)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업자 또는 제출기관	기관(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안전진단 대행업자 (안전진단을 대행시킨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관(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기간	

「해사안전법」 제15조제4항(또는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처분기관의 장
(제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안전진단서 17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안전진단검토 요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진단서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	→	보완요청 (필요시)	→	검토의견 통보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17.>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업체(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분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 :)		
변경 내용 및 사유 (변경등록 신청만 기재합니다.)				

「해사안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자(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가. 장비사양서(장비의 명세, 성능 등) 및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기술인력 채용현황 및 그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 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17.>

제 호

안전진단대행업자(종) 등록증

업체(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 명칭 및 주소)

「해사안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종)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17.>

안전진단대행업자(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업체(기관)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년월일

행정처분 사항

구분	처분내용	처분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17.>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양도·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양도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의 표시	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양도·양수 가격			
	양도·양수 사유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17.>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합병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17.>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휴업 또는 폐업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휴업 또는 폐업할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휴업의 경우 그 기간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해사안전법」 제22조 또는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8.>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활동내용	목적			
	종류			
	기간			
	구역			
	참가자 인적사항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비고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허가서 교부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28.>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신청인	
목적	
종류	
기간	
구역	
조건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 3.>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심사종류	최초인증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임시인증심사 □
심사사유	※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사무소	총인원	명	분사무소	사무소명:	명
				사무소명:	명
	부서	개		사무소명:	명
				사무소명:	명

운항선박의 종류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해양구조물	척	그 밖의 화물선	척

안전관리적합증서 유효일		심사희망일 및 장소	
선종별 선적국	※선박의 기국과 선박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계획 수립	→	심사실시	→	결 재	→	증서발급	→	교 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1. 3.>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심사종류	최초인증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임시인증심사 □	
심사사유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선박상세	선명		선종	항행구역	
	선박번호 (선급번호)		IMO 번호	총톤수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일			심사 희망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대리점 연락처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계획 수립	→ 심사실시	→ 결 재	→ 증서발급	→ 교 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17.>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대행업무의 범위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1부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발 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17.>

정부대행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무범위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2.17.>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안전관리증서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선명(Name of ship) :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	
선적항(Port of registry)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총톤수(Gross tonnage) :	
IMO 번호(IMO number) :	
안전관리회사명(Name of company) :	
안전관리회사 주소(Address of company)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이 선박의 종류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of the ship has been audited and that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following verification that the Document of Compliance (DOC) for the Company is applicable to this type of the ship.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periodical verification and the Document of Compliance remaining valid.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Korea.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심사 일자 :

Completion date of the audit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년 월 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te of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선박안전관리증서(SMC) 1/2

210㎜×297㎜[백상지(150g/㎡)]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제2쪽)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Verification Additional Verification (If required)

이 증서는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the periodic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 of Chapter IX of the Convention and paragraph 13.8 of the ISM Cod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중간인증 심사
(Intermediate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 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 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중간인증 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선박안전관리증서(SMC) 2/2

210㎜×297㎜[백상지(150g/㎡)]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제3쪽)

갱신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 「국제안전경영규약」 B편 제13.13에 따른 표기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VERIFICATION HAS BEEN COMPLIED AND PART B 13.13 OF THE ISM CODE APPLIES)

이 선박은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이 증서는 국제안전경영규약 B편 제13.13절에 따라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 B of the ISM Code, and the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part B 13.13 of the ISM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장 소(Place) _____
일 자(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국제안전경영규약」 B편 제13.12절이 적용되는 인증심사를 위한 항구에 입항 때까지 또는 같은 규칙 B편 제13.14절이 적용되는 유예기간동안 이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VERIFICATION WHERE SECTION B/13.12 OF THE ISM CODE APPLIES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SECTION B/13.14 OF THE ISM CODE APPLIES)

이 증서는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 B편 제13.12 또는 제13.14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part B 13.12 of the ISM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장 소(Place) _____
일 자(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210㎜×297㎜[백상지(15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17.>

(앞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안전관리적합증서
DOCUMENT OF COMPLIANC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안전관리회사의 명칭 및 주소 :

(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위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해당 선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of the Company has been audited and that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for the types of Ships listed below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Docu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periodical verification.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Korea.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심사 일자 :

Completion date of the audit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 _____

년 월 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te of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안전관리적합증서(DOC) 1/2

210㎜×297㎜[백상지(150g/㎡)]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뒤쪽)

중간인증심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Verification

이 증서는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the periodic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 of Chapter IX of the Convention and paragraph 13.4 of the ISM Cod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제1차 중간인증심사 (1st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2차 중간인증심사 (2nd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3차 중간인증심사 (3rd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제4차 중간인증심사 (4th Annual Verifica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안전관리적합증서(DOC) 2/2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17.> (앞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INTERIM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선명(Name of ship) :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	
선적항(Port of registry)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총톤수(Gross tonnage) :	
IMO 번호(IMO number) :	
안전관리회사명(Name of company) :	
안전관리회사 주소(Address of company)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이 선박의 종류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4.4 of the ISM Code has been met and that the Document of Compliance(DOC)/Interim Document of Compliance(Delete as appropriate) of the Company is relevant to this ship.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Interim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periodical verification and the Document of Compliance remaining valid.

「해사안전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Korea.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심사 일자 :
Completion date of the audit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te of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Interim SMC) 1/2

210㎜×297㎜[백상지(150g/㎡)]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뒤쪽)

이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____년 ___월 ___일까지 연장합니다.

The Validity of this Interim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is extended to _____ .

연장일(Date of extension) :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Interim SMC) 2/2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17.>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INTERIM DOCUMENT OF COMPLIANC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안전관리회사의 명칭 및 주소 :
(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위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며, 해당 선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of the Company has been recognized as meeting the objectives of paragraph 1.2.3 of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for the types of Ships listed below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Docu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

「해사안전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Korea.

년 월 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te of

인증심사원 : _____ (서명)
(Signature of the duly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certificate)

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의 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2.17.>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박 [선박 식별번호(IMO No.):]

선명	총톤수	선박의 용도 (항행구역)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사유

「해사안전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교 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17.>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인증심사기관명			인증심사일	
해당 사업장	사업장명칭		인증심사종류	
	신청사유			
해당선박	선명		총톤수	
	선박의 종류		인증심사종류	
	신청사유			
비고				

「해사안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심사 결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1. 3.>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사유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 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록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17.>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Certification of Company under ISM Code 3.1)

회사명 (Name of Company)			
대표자명 (Name of President)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주소 (Address of Company)			
등록조건 (Type of Ship)			

「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company is an entity who i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attached ship(s).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Official No. / IMO No.)	총톤수 (Gross Tonnage)	선 종 (Type of Ship)	선박소유자 (Owner) (운항자 Operator)	비 고 (Remark)

210㎜×297㎜[백상지(15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12.17.>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

FORM A

REPORT OF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1]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copy to : master

head office
(address)
(telephone)
(telefax:) flag State (e-mail address)

PSCO
if ship is detained, copy to:

IMO

recognized organization, if applicable

1 name of reporting authority REPUBLIC OF KOREA 2 name of ship _____
3 flag of ship _____ 4 type of ship _____ 5 call sign _____
6 IMO number _____ 7 gross tonnage _____ 8 deadweight(where applicable) _____
9 year of build _____ 10 date of inspection _____ 11 place of inspection _____
12 classification society _____ 13 date of release from detention[2] _____
14 particulars of company _____
15 name and signature of master to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under 14 is correct:
name _____ signature _____
16 details of ship certificates

	a title	b issuing authority	c date of issue and expi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d information on last intermediate or annual survey

	date	surveying authority	place
1			
2			
3			
4			
5			
6			
7			
8			
9			
10			
11			

17 deficiencies ☐ no ☐ yes (see attached FORM B)
18 ship detained ☐ no ☐ yes [3]
19 supporting documentation ☐ no ☐ yes (see annex)

issuing office name _____
(duly authorized PSCO of reporting authority)
telephone _____
telefax: _____ signature _____

This report must be retained on board for period of two years and must be available for consultation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t all times.

[1] This inspection report has been issu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master and other port State that an inspection by the port State, mentioned in the heading, has taken place. This inspection report cannot be construed as a seaworthiness certificate in excess of the certificates the ship is required to carry.
[2] To be completed in the event of a detention.
[3] Masters and companies are advised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a detention may be subject to future publication.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

FORM B

REPORT OF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copy to : master

head office
(address)
(telephone)
(telefax)

PSCO
if ship is detained, copy to:
flag State
(e-mail address)

IMO

recognized organization, if applicable

2 name of ship_____ 6 IMO number _____

10 date of inspection_____ 11 place of inspection_____

20 number	21 code	nature of deficiency [4]	convention reference [5]	22 action taken [6]	23 reporable RO [6]

name _____
(duly authorized PSCO of reporting authority)

signature _____

4) This inspection was not a full survey and deficiencies listed may not be exhaustive. In the event of a detention, it is recommended that full survey is carried out and all deficiencies are rectified before an application for re-inspection is made
5) To be completed in the event of a detention.
6) Applicable Deficiency Action Codes(see reverse side of copy) to be entered.

※ If the owner of a ship objects to the detention of a vessel, he will have a right of appeal against a detention within 90 days from date of detention.

codes for action taken

Deficiency action code	
10	deficiency rectified
16	rectify deficiency at next port
16	rectify deficiency within 14days
17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18	rectify conformity within 3 months
30	detainable deficiency
99	other (specify in clear text)

PSC	inspection action code (tick as applicable)	
26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informed	☐
27	ship expelled on security grounds	☐
40	next port informed	☐
45	rectify detainable deficiencies at next port	☐
60	flag State/consul informed	☐
66	flag State consulted	☐
70	classification society informed	☐
86	investigation of contravention of discharge provision(MARPOL)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2.17.>

기국통제점검보고서

양식 A (Form A)

REPORT OF FLAG STATE CONTROL INSPECTION

1.	선 명 Name of ship		2.	용 도 Type of ship		3.	IMO 번호 IMO number	
4.	총톤수 Gross tonnage		5.	건조년도 Year of build		6.	선 급 Classification society	
7.	점검일 Date of inspection			8.	점검장소 Place of inspection			
9.	선박소유자 Company							
10.	선 장 Master	성 명 Name			서 명 Signature			

11. 증서현황 Certificate

증서명 Title	발행기관 Issuing authority	발행일 Date of Issue	유효기간 Date of expiry

12.	최근 선박검사 종류/일자 Last intermediate or annual survey		
13.	지적사항 Deficiencies	☐ No	☐ Yes
14.	출항정지 Ship detained	☐ No	☐ Yes
15.	선급 관련 중대 결함 Detainable deficiencies related to classification society	☐ No	☐ Yes
16.	첨부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 No	☐ Yes

발행기관 Issuing office: ○○지방해양수산청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기국통제검사관 FSCO

전화 Telephone

팩스 Telefax

서 명 Signature

* 시정·보완 및 항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국통제점검보고서

양식 B (Form B)

REPORT OF FLAG STATE CONTROL INSPECTION

1.	선 명 Name of ship		3.	IMO 번호 IMO number	
7.	점검일 Date of inspection		8.	점검장소 Place of inspection	

17. 결함사항 Deficiency

결함내용 Nature of deficiency	조치사항 Action taken	선급책임 RO responsibility

* 17호의 경우에는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기국통제검사관
FSCO

서 명
Signatur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12.17.>

(앞쪽)

제 호

해사안전감독관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해사안전감독관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해사안전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사람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